「당선통장」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당선통장(이하 '이 통장' 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각종 공직선거 입후보자,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후원회(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)로 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판매기간

이 통장은 공직선거 기간 동안 한시 판매하며, 판매기간은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에 게시합니다.

제 5 조 적용이율

이 통장의 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게시한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6 조 우대서비스

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 이체수수료(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) 및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(선거관리 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잔액증명서 발급 시)를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은행이 정한 기간 동안 면제하며,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에 게시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국민당선통장 및 구 주택은행의 필승기원통장은 2002.9.23 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